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정책과제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률상 정책 대상인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요건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제4조).
- 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안건의 부의요구,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전문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5조).
- 라. 긴급수급안정화조정시 내용·사유 등을 고시하도록고, 사업자등에

대한 관련자료 요청 근거 및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마.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선정시 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업·사업자단체 등은 핵심 전략기술의 선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바.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선정을 위한 신청, 평가위원회, 서면·현장조사, 선정서 발급, 5년 범위의 유효기간 및 연장 근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사.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기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선정을 위한 신청, 평가위원회, 서면·현장조사, 선정서 발급, 5년 범위의 유효기간 및 연장 근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제26조).

아.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1조).

자.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경쟁력 분석, 민간투자 유치·지원 등 기술개발사업 범위 및 기술개발사업 관련 참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5조~제40조).

카.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공고의 근거,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등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1조).

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관련, 이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장을 둘 수 있으며, 정부가 융합혁신지원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5조).

파. 소재·부품·장비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개방·활용 절차를 규정함(안 제49조~제50조)

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평가비용 지원, 후속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 실증시험·성능검증 촉진사업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54조).

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범위에 신뢰성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평가 지원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55조~제58조).

너. 소재·부품·장비정보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업 범위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소재·부품·장비의 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연구개발인력 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63조~제65조).

더.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대상 공공기관 등을 규정함(안 제67조).

러.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교육시설·전문인력 확보 등 지정요건을 규정함(안 제71조~제73조).

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신청 및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육성시책에 기반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확보,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5조~제79조).

버.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협력모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신청하며,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협력모델 지원사업에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투자·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80조~제82조).

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관련 규제개선을 받으려는 협력모델 참여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에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83조~제84조).

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련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 중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87조).

저.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사무의 위탁 대상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 및 연간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8조).

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화 관련 업무, 통계작성 관련 업무, 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관련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 부처 협의 예정임

라. 기 타 : 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별첨
2) 국무조정실과 사전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없음
3) 입법예고(2020.1.23.~3.3.)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과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에 영향력이 큰 것

제2장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상충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재·부품·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조사방법 및 조사

주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제6조(경쟁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조정실장
2.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인단체,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자단체, 그 밖에 무역·투자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의 장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

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의 장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쟁력위원회에 출
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
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
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경쟁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력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쟁력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또는 해태한 경우

제10조(안전의 부의요구)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전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회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소재부품, 장비,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계 부처,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

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소관 분야별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 및 관련기술, 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의 목적에 따라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소속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13조(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구성 등)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의의 운영지원 등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

④ 그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및 수당) ① 경쟁력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의 위원, 상생협회의의 구성원 및 법 제9조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직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등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경쟁력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쟁력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력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쟁력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법제와 회계의 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추진단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두는 경우, 추진단장이 수급대응지원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협회·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긴급수급안정화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그 수급안정화조정의 내용과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자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급안정화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행정심판
2. 「특허법」에 따른 특허심판
3.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제4장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9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공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협회 등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업, 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핵심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
2. 선정 요청의 이유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관련한 자료
4. 해당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의견

5.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요청에 관한 참고자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환경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재검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선정”은 “재검토”로 본다.

⑦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재검토와 관련한 시기, 세부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

합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 투자조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시장여건 및 글로벌 진출 잠재력
2. 기술개발, 생산·투자 등과 관련한 경영 및 재무상황
3. 그 밖에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절차)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특화선도기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밖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특화선도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특화선도기업의 선정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전문기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부품·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전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이란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을 말한다.

제24조(전문기업 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문기업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매출액 비중
2.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연구인력의 수
3.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해당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금액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대표의 기술수준, 기업 관리능력 등 보유 역량
2.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기술혁신성 등 기술력
3. 창업기업의 제품화 역량, 수익 전망 등 성장 가능성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6조(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이하 “강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강소기업등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밖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강소기업등은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강소기업등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강소기업등의 선정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사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지원사업 등 가능한 내용을 특화선도기업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특화선도기업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 해당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이미 발급된 선정서 또는 확인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취소 및 확인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등록요건 등) ① 전문투자조합은 해당 전문투자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 1명 이상(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 중 하나가 된다.

②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3.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소재·부품·장비를 수요하는 기업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 가. 출자금 총액이 전문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나.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및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④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손실금충당계획을 말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때에는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이란 전문투자조합의 출자금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제30조(전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문투자조합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32조(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등의 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수·합병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합병등 확인요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인수·합병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전문화·대형화 등을 도모할 것
2. 연구개발·생산·판매 등의 부문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
3. 세계시장에서의 해당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4.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

제33조(인수·합병등의 촉진 지원)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수·합병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전문화·대형화를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발굴

2. 인수·합병등과 관련된 기술거래와 기술이전, 기술도입 등에 관한
자문

제34조(투자기관협회의 설립)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금 관리주체
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기관협회가 인정하는 자

② 투자기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
2. 소재·부품·장비사업자에 대한 투자의 지원 및 조정
3. 회원이 투자한 소재·부품·장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법 제21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제산업협력 및 교류
촉진
5.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등에 대한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③ 투자기관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청서에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5장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35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과제
2. 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금액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개발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

2. 기술개발의 사업화 타당성 조사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
5. 기술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6. 해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알선
7. 법 제20조·제21조에 따라 도입한 기술의 후속 개발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7조(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11.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12.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1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1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5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 제38조(기술개발우대기업 등)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 투자한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수·합병등의 지원을 받은 기업
3. 법 제22조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부품·장비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4. 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5. 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성능검증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에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제39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기술개발사업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0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성과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재·부품·장비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2.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2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등 사업자
 6.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7.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공유·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8.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제43조(사업화 지원요청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개발내용, 사업화계획, 지원요청내용 등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가능 여부, 지원계획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

업은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국제표준화 지원)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비용
2.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부품·장비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 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표준화 동향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융합혁신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융합혁신지원단에는 융합혁신지원단을 대표하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견 연구원의 파견근무기간·보수 등 파견근무조건은 파견 연구원, 해당 파견 연구원 소속기관의 장 및 파견받는 특허선도기업등 소재·부품·장비기업 대표의 3자간에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
2.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의 알선
3.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
4. 유관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5.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의 지원
6. 투자의 유치 및 국제기술협력
7. 국제전시회의 참가 알선 등 해외진출 지원
8.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원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지원실적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차년도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융합

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우대요청 대상기관)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관·단체: 해당 공익법인·기관·단체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장 소재·부품·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

제49조(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대상기관)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50조(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 등에 관한 계획

2.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 실적

3. 실증·생산시설의 관리·운영 및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촉진을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증·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증·생산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실증·생산시설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촉진 등에 관한 정책 개발·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제1항의 자료 및 정보의 취합·관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실증·생산시설의 개방·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1조(실증기반 구축 지원 관련 사항)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구축하려는 실증기반 시설·장비 등의 개방 및 활용 계획
2. 공급기업에 대한 실증시험·성능검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 운영 계획
3. 실증기반을 활용하여 성능검증 등을 통과한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판로지원 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실증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절차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각 호의 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를 지원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용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 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적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융자·출연
2. 실증기반 구축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 및 알선
3. 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우선입주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적 지원

제5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사용·수익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양여, 사용·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제54조(실증시험·성능검증 사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성능검증 평가비용의 지원
2. 실증시험·성능검증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3.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뢰성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기업의 신뢰성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
3. 신뢰성 관련정보의 조사·분석 및 보급
4. 기업의 신뢰성 기술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평가 지원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속수명시험법의 개발 및 보급
2. 국내외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비교 평가
3. 소재·부품·장비의 고장 원인 분석 및 재현 시험

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평가기법·기술의 개발

제56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자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소요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수행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3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사업”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실시기관”으로 본다.

제58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 출연금을 신뢰성기반구축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기술개발사업”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으로, “기술개발사업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로 본다.

제59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뢰성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자원,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신뢰성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 수행능력 및 분석능력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신뢰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신뢰성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제60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신뢰성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해당
신뢰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
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1조(신뢰성 보증사업의 담보범위·운영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 보증사업(이하 “신뢰성보증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소재·부품·장비의 가액

2. 소재·부품·장비의 회수·검사와 대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손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신뢰성보증사업자
가 정하는 비용

② 신뢰성보증사업의 담보기간은 해당 소재·부품·장비의 수명으로
하되, 수명이 장기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신뢰성보증사업자(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제공제조합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성보증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타의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신뢰성보증사업자는 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

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소재·부품·장비를 고시할 수 있다.

⑥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2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보증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출자 또는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뢰성보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사업자”는 “신뢰성보증사업자”로, “기술개발사업”은 “신뢰성보증사업”으로 본다.

제63조(소재·부품·장비정보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업)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소재·부품·장비의 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3.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구개발 인력 정보의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정보의 생산·관리·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제64조(소재·부품·장비정보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정보의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소재·부품·장비정보사업”이라 한다)을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소재·부품·장비정보사업”으로 본다.

제65조(소재·부품·장비 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업의 계획과 실행
2. 제1호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보 협력방안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 정보의 협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소재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광융합기술개발사업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10.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기술개발사업
 11. 「방위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12.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6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구매촉진) ①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②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요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③ 법 제3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회계 연

도마다 해당 기관의 구매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7장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68조(전문인력양성사업)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퇴직근로자 등 소재·부품·장비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2. 전문기술인력의 교류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69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의 부담금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학,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관련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공동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7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동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입주기업의 전문기술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업단지
2. 입주기업 중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단지

3. 전문기술인력의 양성·훈련체계가 취약한 산업단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및 훈련기관을 지정할 때에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 후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5.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72조(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실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1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과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과제 및 그 내용, 사업수행책임자,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일부를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추진실적과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개발사업자”는 “지정교육훈련기관”으로, “기술개발사업”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본다.

제7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육성) ①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2.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3.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해외 우수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제7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6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와 특화단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7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가 법 제46조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화단지의 명칭·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되는 특화단지의 명칭·위치
2. 해당 특화단지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사유

제78조(특화단지육성시책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지원사항

제79조(특화단지의 지원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4

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산업기반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된다.

1.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2.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3. 특화단지의 공동구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특화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공유 재산의 관리청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

제80조(협력모델의 지원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를 통하여 지원의 범위, 조건 등을 결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81조(협력모델의 지원사업)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증설 및 개선 등
2. 기술진단 및 자문·지도
3.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4. 전문인력 파견 또는 취업 등 인력지원
5.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6.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2조(협력모델의 지원 및 우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력모델과 관련하여 법 제50조제1항의 지원 및 우대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회신기간 요청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신을 받은 경우, 이를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지원실적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83조(규제개선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 중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 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4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결정 조건의 준수 여부, 심의·결정사항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에 따른 협력모델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규제개선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의 이행 현황
3. 해당 협력모델사업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③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및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쟁력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법 제52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52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5조(산업용지 등의 양도차익 핵심전략기술 관련 사용비율)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이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처분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3. 그 밖에 해당 산업용지 등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경비

제10장 특별회계 등

제86조(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관리·운영)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7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8조(위탁기관)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용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용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9조(취급수수료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90조(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및 그 지원에 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제협력사업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사업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실증시험·성능검증 사업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정보 관련 사업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융합혁신지원단
2. 투자기관협의회

3. 사업자단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

④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간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수수료 등) ① 법 제75조에 따른 비용 또는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②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또는 실시기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에서 그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분야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마련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에 필요한 지원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관련 연구 및 지원 시책 마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통계작성 업무 및 정보 생산·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을 것
2.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일정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실적이 있거나 해당 업무계획을 수립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업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기관협의회에 위탁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⑦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재료 및 가공방법, 해당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그 새로운 유형의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별표 2]

특화선도기업등의 선정취소 및 확인취소의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선정취소 또는 확인취소인 경우(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지원중단 12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선정취소 또는 확인취소		
나. 특화선도기업등의 요건을 갖추지	법 제17조	경고	지원중단	선정취소

아니하게 된 경우	제1항제2호		12개월	또는 확인취소
다.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선정취소 또는 확인취소
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경고	지원중단 12개월	선정취소 또는 확인취소
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선정취소 또는 확인취소		
바. 경미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지원중단 6개월	지원중단 12개월	선정취소 또는 확인취소

[별표 3]

특화선도기업등 투자대상기금(제31조 관련)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별표 4]

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60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신뢰성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60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해당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제6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 5]

비용의 산정기준(제91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가. 인건비	기술지도·자문·기술정보의 제공·평가결과 분석 등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나. 재료비	소재·부품·장비기술 지원활동 과정 및 신뢰성 향상 지원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다.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하는 방법에 따른 산출한 비용
라.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마.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기술지원 및 신뢰성 향상 지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시험대상 소재·부품·장비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비고

1. 가목에 따른 인건비는 소요인력의 기준 및 인건비의 단가를 사업별로 그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또는 실시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2. 마목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소재·부품·장비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연 락 처	(044) 203-4914